

[붙임]

## 【재취업심사 관련 「밀접한 업무 관련성」 판단기준】

○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재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한 업무가 취업예정 출자회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.

1. 공사,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 - A. 기본사업계획 수립, 규격 등 검토
  - B. 제안서 검토, 평가, 입찰 및 계약체결
  - C.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(감독, 검사, 검수 등)
  - D. 대금 지급, 후속 조치(평가, 감사 등) 등
2. 법령, 공사 규정에 근거하여 출자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업무
  - E. 검사, 감독 등 계획수립
  - F.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
  - G. 심리, 처분 검토,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
3. 출자회사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  - H. 출자회사와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, 조세, 특허, 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, 심판, 심결 등 담당
4. 생산방식·규격·격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  - I. 검사, 감사계획 등의 수립
  - J. 검사, 감사반 편성 및 참여
  - K.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, 후속 조치 등
5.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출자회사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L. 정책 등의 수립, 조정, 시행, 평가, 감사, 후속 조치, 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처리
  - M. 정책, 사업 등의 검토, 결재 또는 안건검토, 심의 등을 위한 회의 참석 등 의사결정 관여
  - N.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, 정책건의, 반영,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, 모습으로 특정 출자회사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
6. 기타 위원회에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업무
  - O. 위원회가 별도 수립한 기준이 있는 경우